

공능유적본부(종묘관리소) 2024년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(2차)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

2024년도 문화재청 공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(2차) 최종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14일

공능유적본부장

1. 합격자 명단

직종	채용예정분야	합격자	
		응시번호	성명(전화번호 뒤 2자리)
공무직 촉탁직	시설물관리원 다급	2	노○○(**00)

※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성명의 일부만 공개합니다.(식별번호는 휴대전화 끝번호)

(예비합격자)

○ 시설물관리원 다급 : 응시번호 20번 김○○(예비 1, **78), 10번 김○○(예비 2, **61)

※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, 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거나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퇴직 할 경우 차순위 득점자(예비합격자)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2. 합격자 서류 제출 안내

가. 제출기한 : 2024. 3. 19.(화), 오후 5시

나. 제출장소 : 종묘관리소 사무실

○ 제출서류

- 채용신체검사서(일반용) 1부 (* 건강검진 대체통보서로 대체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(* 붙임 1)
- 결격사유 확인서 (* 붙임 2)
- 주민등록등본·초본 각 1부 (*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)
(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)
-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- 사진(반명합판) 1매 및 통장사본 1부(급여지급용 계좌)

3. 기타사항 안내

가. 다음의 경우 합격 통보 및 채용 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-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발견 시
-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건강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결격사유 확인 시

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묘관리소 인사담당(02-2174-3604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
2. 결격사유 확인서 1부. 끝.

[붙임 1]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			
1. 이용기관 명칭 :			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			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			
연번	행정정보명	연번	행정정보명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 (<input type="checkbox"/> 주민등록 <input type="checkbox"/> 여권 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등록 <input type="checkbox"/> 운전면허) 번호 :			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			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		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		
년 월 일			
대상자	본인	성 명 :	(서명 또는 인)
		생년월일 :	
		전화번호 :	

[붙임 2]

결격사유 확인서

○ 성 명:

○ 생년월일:

본인은 문화재청 공무원 등 근로자로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

임용 후 확인서 내용과 달리 사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24. . .

확인자: (인)

공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장 귀하